2025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 지침 안내

-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 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, 청년고용 활성화에 기여
- 고용조정 제한 기간 : 참여청년 채용일 3개월 전 ~ 정규직으로 채용 된 후 1년의 기간 지원금 신청중 고용조정 이직(구,인위적 감원) 발생시 모든 지원금은 중단

- 대상자 : 도약장려금 참여 청년과 다른 근로자 모두 포함

● 지원금

- 유형 1 (기존) : (청년 1인당) 월 60만원 × 최대 12개월 = 1년 최대 720만원
- 유형 2 (신설)
 - -. 조건 : 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
 - -. 업종 : <제조업>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(제11차) 대분류가 'C.제조업'기업 모두가 대상이 됨
 - ※ 제조업 이외의 빈일자리 업종은 -3쪽- 참조
 - -. 기업 지원금 : '유형 1'의 지원 내용과 동일
 - -. 청년 지원금 : 장기근속인센티브로 최대 480만원 지원 (18,24개월 각 240만원) *청년 채용자 명단 제출 순서에 따라 지급, 조기마감시 지원금 지급 불가
- 2025년 최저임금 2,096,270원 (주5일, 일 8시간근무 기준)
 - 최저임금 산정범위: 기본급, 직무수당, 직책수당 등
- 청년 채용 ~ 6개월(최소고용유지기간) 6개월내 고용조정 이직(구, 인위적감원) 발생이나 자발적

퇴사한 경우 지원금 지급 하지 않음

-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
 - 참여 기간 동안 유지해야함, 유지 × ► (부적격처리됨)
-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형태 - 파견 근로자(A소속으로 B에서 일하는 사람), 용역, 도급, 위탁 → 가입 제한
-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중 중복 참여한 자 → 가입 제한
 - 인건비 지원받는 사업 일체, (특별)고용촉진장려금 등
- 사업주(법인인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·비속 관계에 있는 자 → 가입 제한
-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→ 가입 제한
 - 부동산 임대업 가능(단, 고용인이 없고, 사무실이 없어야함)
- 정규직 내 수습기간 3개월 이내만 인정함
- 허위로 서류를 작성·제출시 → 가입 제한 및 부정수급
 - 부정청구 결정 시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최대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, 필요시 참여제한 및 수사기관 통보
- 참여 기업 및 청년은 운영기관 신청 및 승인시 **상황에서 변경이 있을 경우** 반드시 운영기관으로 변경 사유를 공지해야 함

1. 지원대상(기업)

■ 유형 1

- ① 피보험자수 5인 이상, 우선지원 대상기업
 -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
- ② 피보험자수 1인이상 5인미만인 기업 가능
 - 지식서비스업, 문화콘텐츠, 신·재생에너지 산업, 청년창업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,
- ③ 참여기업이 여러차례에 걸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거나, 운영기관의 배정인원 마감등으로 다른 운영기관에 재신청하는 경우
 - 최초 사업 참여 신청시 승인받은 기준 피보험자수
- ④ 연 매출액: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× 1,900만원이상
 - 사업개시일 1년 이상 기업 해당
 - 연 매출액 발급(2023년 또는 2024년)
 - * 국세청 홈텍스(hometax.go.kr) 이용 시 로그인 - 민원증명 - 부가가치세,과세표준증명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발급
 - * 정부 24 (gov.kr) 이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

참여자격

■ 유형 2 (25년도 신설)

- ①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
- ② 빈일자리 업종:
 - -. <제조업>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(제11차) 대분류가 'C.제조업'
 - -. 제조업 이외의 빈일자리 업종

연번	빈일자리 업종	소관부처	대상기업
1	보건복지업	복지부	1,778개 대상기업
2	농업	농식품부	35개 대상기업 * 음식점업·제조업 등 포함
3	식품제조업	농식품부	16개 대상기업
4	해운업	해수부	907개 대상기업
5	수산업	해수부	2개 대상기업

※ 신청 누리집에 대상기업 리스트 별도 첨부 예정

- ①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제 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
 - 일반유흥(56211), 무도유흥 주점업(56212), 기타주점업(56219), 기타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법(91249), 무도장운영법(91291)
- ②「청소년 보호법」등 법률에 의거 청소년유해업소,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법
 - 단란주점, 유흥주점, 노래연습장업, 비디오감상실업, 무도장업, 복권발행업
 - 단, 호텔업(55101), 휴양콘도 운영업(55103) 가능
- ③ 국가 및 공공기관 등
 - 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, 지방의회, 교육행정기관 등
- ④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, 근로자 파견업 등 해당 청년을 직접 사용아닌 경우
 - 인력공급업(7512), 경비경호업(75310),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(74100)
 - 기업에서 파견·용역 근로자 등을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

제외대상

- ⑤ 임금체불기업
- ⑥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
- ⑦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급 지급 제한 기간내 있는 사업주
- ⑧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
- ⑨ 지원대상자가 동일사업주에 재 입사하는 경우(1년이상은 가능)
- ⑩ 지원대상자가 관련사업주에 재 입사하는 경우(1년이상은 가능)
 - 이직 전 인수·합병·분할된 경우
 - 이직 전 사업과 자본·자금·인사·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
 - 이직 전 사업의 시설·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
 -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
- ①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

2. 지원대상(청년)

●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~ 34세 이하인 자

-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

●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

- * 취업 중인 자
 -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
 -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(프리랜서)로 3개월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자
 -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# 부동산 임대업 가능(단, 임대사무실 없고, 근로자 고용 안 한 경우)
- * 참여요건(참여요건 10개중 1개가능 = 참여가능) * 다른 자격요건 확인필수

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

-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
- 자영업자 및 특고·예술인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취업상태임 단, 1개월 이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실업으로 산정(상용, 자영업자, 특고·예술인)

참여자격

②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

- 고졸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
- 방송·통신·방송통신·사이버대(원격대학)·야간대학·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 에 진학한 자는 대학에 재적 중으로 간주해서 요건2 적용 불가
- 고등학교 졸업예정(기업-현장선도기업, 수업일수 2/3 출석한 자) 가능

③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

-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(고용보험법 제 23조 및 시행령 제26조)
 - * 취업희망풀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지원금 검토시에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이되지 않을 경우 제외됨
-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받을 시 중복은 불가

④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

- 수급자격을 인정 받고 취업활동계획(IAP)을 수립한 청년
-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
- ⑥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청년,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
 -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년등
- ⑦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
 - 2023년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

- ⑧ 북한이탈청년(확인서 민원24 발급가능)
- ⑨ 자영업 폐업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
 - 폐업사실 증명원(국세청 발급)-청년발급
- ⑩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
 -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은 제외
 - 3개월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제외(상용, 자영업자, 특고·예술인)
 - 방송·통신·방송통신·사이버대(원격대학)·야간대학·대학원등을 포함한 대학에 재학중인자(졸업예정자 포함)는 요건10 적용불가
- 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(계약직 등)
- ② 고용보험(4대보험포함)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
- ③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인 근로자
- ④ 사업주(법인인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
-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-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 이민자(F-6) 가능

제외대상

- ⑥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
 - (특별)고용촉진장려금등
 - 연구비지원 : 청년 인건비가 명확히 명시된 경우에는 차액만 지급 청년 인건비 명시 없이 총 연구비만 받아서 인건비 지급인 경우 전액을 지급
- ⑦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
- ⑧ 지원제외(소비행락업등)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
- ⑨ 인력공급업(7512), 경비 경호업(75310),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(74100) 기업이 파견·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경우

3. 채용 요건

입사일	2025. 1. 1. ~ 2025. 12. 31		
근무형태	*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 -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하면서 수습(시용) 기간 정한 경우도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지원대상 인정(단, 3개월 이내만 인정) - 기간제 근로자로 먼저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한 경우 전환시점부터 지원대상 인정		
참여기간	참여신청서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(2025.12.31.까지) 청년 채용하여야 함		
지원금신청	청년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(6개월) 종료 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신청		
고용조정 제한 기간 (구, 인위적감원)	* 근속 1년간 지원금 신청 시(720만원) - 청년 채용일 3개월 전 ~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- 운영기관 관리 * 근속 2년 후 지원금 신청 시(480만원) - 정규직 채용1년 후 ~ 정규직 채용 2년내(고용조정 이직 제한기간 없음) - 고용센터 관리		
고 용 조정 이직	* 해당 기업 전체 근로자 - 고용보험 이직사유 구분코드(대분류,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) - 23(중분류,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퇴사)(세분류①~®) - 26(중분류, 근로자 귀책에 의한 권고사직)(세분류③)되는 경우		
고용조정 발생시 제한	- 최소고용기간(6개월) 유지 못한 경우 - 지원금 일체 지급 하지 않음 - 최소고용기간(6개월) 유지 후 발생한 경우 - 월할계산하여 지급 (예) 2024.1.1.(채용), 2024.07.16.(퇴사) - 7개월 16일 근무 / 지원금 7개월 지급함(16일치 일할 계산없음)		

4. 지원 내용

신청기간	채용일은 2025.1.1. ~ 2025.12.31. *채용시기에 따라 2025년에도 지급될 수 있음
지원기간	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,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 지급함
지원한도	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수 50%까지 지원 * 기업의 피보험자수 100명/50% = 50명 참여가능 * 기업피보험자수 34.2명(1년평균) 인 경우- 35명으로 인정, 35/50%=17.5명/18명 참여가능
지원한도 설정 및 채용 계획 변경	참여기업의 지원한도 설정 및 채용계획 변경(운영기관 승인 후 변경) - 최종 지원금 신청시 지원한도 오류 발견시 정정 할 수 있음

5-1. 지원 수준, 절차

·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, 1년 최대 720만월(최대 12개월) + 2년 최대 480만원(최대 24개월)				
	① 참여청년이 채용 후 6개월(최소고용기간)이내에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			
지원수준	② 참여 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인(6개월)이상을 근로 한 후 퇴사한 경우 - 1회차 : 6개월분 지원금 지급 - 1회차 후 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 - 만약 1회차 이후 2개월 지원금 신청 전 퇴사한 경우 월할계산하여 지원금 지급함 ③ 지원대상 청년이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시 - 고용유지지원금 일수 동안 지원금 미지급함 (최대 12개월 중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 지원함)			
지원절차	① 청년일자리창출지원 누리집(work.go.kr/youthjob)에서 운영기관에 신청 ② 운영기관 적격여부 심사 ③ 승인 후 협약 체결 ④ 청년 채용 후 10일 이내 - 채용자 명단 제출(서식6) - 개인정보 동의서(서식7) - 근로계약서 사본 - 그 외 필요서류 요청시 제출			
	지원 주기 채용일 ⑥ 지원금 신청시	1회차 채용 후 6개월 제축 서류	2회차 채용 후 9개월	3회차 채용 후 12개월
	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(서식8) - 임금 지급증빙자료(급여대장, 입금내역) - 기업명의 통장 사본(최초 1회신청시 제출) - 그 외 지원금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			

5-2. <유형 2>(신설) 청년 지원 수준, 절차

· 청년 1인당 최대 480만원 지원 (18.24개월 각 240만원) ① 기업이 해당 청년에 대해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Ⅱ유형」의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, 지원대상이 됨 ② 기업의 고용조정 발생하더라도 청년이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함 지원수준 ③ 참여청년이 18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24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, 1회차 이센티브(240만원)를 지급하고 2회차 이센티브는 지급하지 않음 ① 고용24(www.work24.go.kr)에서 사업장 담당 운영기관에 신청 *청년이 직접 신청해야하는 지원금 ② 지원금 신청 지원 주기 1회차 2회차 채용 후 채용 후 지워절차 채용일 18개월 24개월 ③ 지원금 신청시 제출 서류 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(청년용)(서식8) - 개인정보 동의서(서식8-1), - 청년용 확인서(서식8-2)

6. 부정수급

	①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가입 시 기존 채용되어 있던 근로자를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가입시킨 경우
기업	②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가입시킨 경우
	③ 사업주(법인인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인 경우
	④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침 및 약정을 위반한 경우
청년	①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로 고용보험 이력을 숨기거나 부속서류를 허위로 작성·제출한 경우

^{**} 위 내용을 위반 시 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최대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필요시 수 사기관 통보 할 수 있으며, 사업장은 3년간 고용노동부 사업 참여제한, 참여자는 추후 고용노동부 사업 참여 제한 (재가입 불가)입니다.